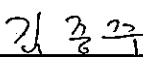


기안	과장	무역조사실장
최재혁	김종주	윤상흠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시행령 개정계획(안) 보고

□ 추진배경

-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양국간 서명되어 그 내용이 확정된바, 동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불공정법 시행령 개정 필요
 - * 주요경과 및 후속절차 : 한-인니CEPA 협상개시('12.3월) → 1차~10차 한-인니 공식협상('12.3월~'19.5월) → 한-인니CEPA 타결('19.11월) → 정식서명('20.12월) → (추진예정) 비준동의('20.上) → 발효('21.下)
- CEPA 발효(11월 예정) 전, 무역위 소관법령(불공정법) 개정 추진

□ 주요 개정내용

- ① FTA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영 제24조1항)
 - * WTO협정문은 글로벌세이프가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FTA체결에 의한 양자간 FTA세이프가드는 시행령에서 별도 규정중임
- ② 잠정FTA세이프가드 조사 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기간 20일 이상 보장 대상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영 제24조12항)
- ③ FTA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점차적인 조치완화 대상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영 제24조16항)
- ④ 글로벌세이프가드 적용배제* 대상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영 제24조의2)
 - * FTA체결국產 품목이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부 대상국가에 대해 글로벌세이프가드 적용배제可

□ 향후 계획

- '21. 4월 : 관계부처 협의 (20일 소요, 입법예고와 동시진행 가능)
- '21. 4월 : 각종 영향평가 (20일 소요, 입법예고와 동시진행 가능)
- '21. 4~5월 : 입법예고 (40일 소요, 법제처 협의후 단축가능)
- '21. 5월~6월 : 법제처 심사 (30일 소요, 법제처 협의후 단축가능)
- '21. 6월 :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및 개정 공포 (7~14일 소요)

* 기 존재하는 법령에 추가문구를 단순 삽입하는 개정안으로 절차 시작부터 완료까지 약 60일 소요 예상

붙임 : 1.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인도네시아공화국

제24조제12항 중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또는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에 따라 미합중국·캐나다·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콜롬비아공화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을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또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5.4조에 따라 미합중국·캐나다·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콜롬비아공화국, 중미 공화국들 또는 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도네시아공화국

제24조의2제1항 중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로부터의”를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부터의”로,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을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인도네시아공화국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 ----- ----- ----- ----- ----- ----- ----- -----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설>	18. 인도네시아공화국
② ~ ⑪ (생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⑫ 무역위원회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조,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또는 「대한민	⑫ ----- ----- ----- ----- ----- ----- -----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 무역협정」 제7.3조에 따라 미합중국·캐나다·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콜롬비아공화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을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과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⑬ ~ ⑮ (생략)

<1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또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5.4조에 따라 미합중국·캐나다·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콜롬비아공화국, 중미 공화국들 또는 인도네시아공화국-----

⑬ ~ ⑮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적용 배제)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는 미합중국·인도 공화국·페루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미합중국·인도공화국·페루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한 때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할 때 미합중국·인도 공화국·페루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1. 인도네시아공화국

제24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적용 배제) ① -----

-----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인도네시아공화국-----
-----.

② -----

--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부터의 -----

-----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인도네시아공화국을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미합중국·인도공화국·페루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

-----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인도네시아공화국-----
-----.

붙임3

한-인니 CEPA 협상 추진 경과

구분		주요 내용
공동 연구	'11.5~11월	- 한-인니 CEPA 관련 공동연구 진행 * 제1차 회의('11.7월), 제2차 회의('11.9월), 제3차 회의('11.10월)
공청회	'11.11월	한-인니 CEPA 필요성 설명,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협상 개시	'12.3월	양국간 정상회담시 한-인니 CEPA 협상개시 선언
1~7차	'14.2월	제7차 협상 이후 5년간 협상 중단
※ 양국 정상간 CEPA 협상 재개 노력 합의 ('18.9월, 서울)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계기		
※ 양국 통상장관간 협상 재개 선언 ('19.2월, 자카르타)		
8차	'19.4월 (서울)	상품, 서비스, 원산지, 협력 등 협상 착수
회기간	'19.6월 (자카르타)	총칙,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등 6개 분야 협상
국회 보고	'19.7월	국회에 협상 추진경과 및 전략 보고
9차	'19.8월 (제주)	총칙,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등 6개 분야에 대해 상당 부분 협상 진전
10차	'19.10월 (발리)	잔여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
※ 양국 통상장관간 실질 타결 선언 ('19.10월, 자카르타)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 ('19.11월, 부산)		
법률 검토	'20.1월 (자카르타)	협정문안(영문) 대면협의
서명전 절차	'20.2월~	- 인니측과 기술협의 및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 * 국문본 번역 및 외교부·법제처 검토

붙임4

무역구제분야 FTA 협정별 비교

구분		한-미국 (‘12.3. 발효)	한-터키 (‘13.5. 발효)	한-호주 (‘14.12 발효)	한-캐나다 (‘15.1. 발효)
반덤핑/ 상계 관세		①조사개시 전 통보 및 협의 ②가격인상약속/ 사전물량합의	①조사개시 전 통보 ②제로잉금지 ③최소부과원칙 ④재심시 미소미진 적용 ⑤누적평가시 주의의무 ⑥재심종료후 반덤핑 조사요건강화	①조사개시 전 통보 ②제로잉금지 ③최소부과원칙 ④가격약속	①조사개시 전 통보 ②최소부과원칙 ③가격약속
다자 세이프가드		재량적 적용배제	조사개시 및 조사결과 관련 정보 제공	재량적 적용배제	재량적 적용배제
양자 세이프가 드	대상	상 품	상 품	상품	상품
	적용 요건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조치 수단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조치 기간	2+1	2+1	2+1	2+2
	조사 기간	1년	1년	1년	1년
	재발 동	재발동 금지	재발동 금지	재발동 금지	-
	보상 /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발동시보상협의 * 30일 이내 미합의 시 24개월간 보복 면제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발동시보상협의 * 30일 이내 미합의 시 24개월간 보복 면제
	잠정 조치	200일 이내 * 조사개시 45일 후	200일 이내	200일 이내	200일 이내
	존속 기간	협정발효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관세철폐 기간동안	협정발효후 10년	관세철폐 종료 후 5년 관세철폐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관세철폐 기간동안	관세철폐 종료 후 10년 협정 발효 후 15년
특별 SG		농산물, 자동차, 섬유 및 의류	농산물	농산물	-

구분		한-중 (‘15.12. 발효)	한-뉴질랜드 (‘15.12. 발효)	한-베트남 (‘15.12. 발효)	한-인니 (‘21.9. 발효예정)
반덤핑/ 상계관세		①조사개시 전 통보 ②가격약속 ③현지실사 전 통보 ④재심종료 후 반덤핑조사요건 강화 ⑤누적평가시 주의의무 ⑥신규수출자 재심시 미소미진 적용 ⑦이해관계자 신청시 공청회 개최고려	①조사개시 전 통보 ②제로잉금지 ③가격약속	①조사개시 전 통보 ②제로잉금지 ③최소부과원칙 ④가격약속 ⑤누적평가시 주의의무 ⑥재심종료후 반덤핑조사요건강화	①조사개시 전 통보 ②제로잉금지 ③최소부과원칙 ④누적평가시 주의의무 ⑤재심종료후 반덤핑조사요건강화 ⑥반우회덤핑 협력
다자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및 조사결과 관련 정보 제공, 양자 및 다자 세이프가드 동시적용 배제	재량적 적용배제, 양자 및 다자 세이프가드 동시적용 배제	조사개시 및 조사결과 관련 정보 제공 재량적 적용배제	조사개시 및 조사결과 관련 정보 제공 재량적 적용배제 양자 및 다자 세이프가드 동시적용 배제
양자 세이프가 드	대상	상품	상품	상품	상품
	적용 요건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조치 수단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조치 기간	2+2	2+1	2+1	2+1
	조사 기간	1년	1년	1년	6개월
	재발 동	조치 상응기간 미경과시 재발동 금지	재발동 금지	재발동 금지	조치 상응기간 미경과시 재발동 금지
	보상 /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잠정 조치	200일 이내	200일 이내	200일 이내 * 조사개시 45일 후	180일 이내 * 조사개시 45일 후
	존속 기간	협정발효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관세철폐 기간동안	협정발효후 5년, 관세철폐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관세철폐 기간동안	협정발효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관세철폐기간동안 타방동의시 존속가능	협정발효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관세철폐 기간동안
특별 SG					

